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85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채현일·복기왕·양부남

박상혁 · 서삼석 · 박해철

이해식 · 김민석 · 전재수

박정현 • 윤건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, 연합회,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

첫째,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.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수십 개소에 달합니다.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,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.

둘째,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, 제대로 된 사무실

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·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

셋째,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,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. 이로 인해,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 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(안 제12조),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(안 제14조),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(안 제14조의2),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법률 제 호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중 "자율방범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"연합대"라 한다)를"을 "자율방범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 1개 조직과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별로 시·도자율방범연합대(이하 "현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1개 조직 및 시·군·구별로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"연합대"라 한다) 1개 조직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·도경찰청이 있거나, 시·군·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 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중 "운영 등에"를 "운영(사무실·초소의 설치 비용 및 임차료를 포함한다) 등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

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재해보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, 가입 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2조(중앙회 · 연합회 · 연합대 | 제12조(중앙회 · 연합회 · 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 설립 등) ① -----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 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 범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 범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 다)와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 다)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 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에 시・ 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 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"연합 도별로 시 · 도자율방범연합회 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1개 조 시 • 군 • 구자율방범연합대(이 직 및 시·군·구별로 시·군 하 "연합대"라 한다)를 설립할 • 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"연 수 있다. <단서 신설> 합대"라 한다) 1개 조직을---------. 다만, 특별시·광역시 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에 2개 이상의 시·도경찰청이 있거나, 시·군·구에 2개 이상 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 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. ② · 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 | 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----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 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 ·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 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 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 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운영(사무실·초소의 설치 비용 및 임차료를 포함한다) 등에----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 |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 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 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 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>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방법 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각각 정한다.

제14조의2(재해보상 등)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 에 따른 교육・훈련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질병에 걸리거나

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보상금의 원활한 지 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 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, 가입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 레로 각각 정한다.